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결합

- 롤스의 정의론 재해석을 통한 모색 -

■ 최 광 은 ■

요약문

전 세계적으로 소득의 불평등과 함께 자산의 불평등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오늘날 심화 되는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논의는 드물다. 자산의 광범위한 분산을 목표로 한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자산과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시대를 극복하고자 할 때 자산의 분산과 소득의 보장을 한 시야에 넣는 것이 필요한데, 이 글은 롤스의 정의론이 충분히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을 짚어보고, 롤스 이론의 재해석을 통해 그의 이론이 기본소득과도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은 각기 고유의 정책 목표를 지니면서도 공통의 기반과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글의 결론은 모두에게

최광은

최소한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이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밀접히 결합해야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더 큰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제 : 정치 철학, 사회 철학

검색어 : 불평등, 기본소득, 제임스 미드, 존 롤스, 재산 소유 민주주의

1. 들어가며

다차원적인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더불어 자산 불평등이 최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부의 불평등 양상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며 80년대 이후의 심화 현상을 분석한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Piketty, 2014)은 이러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물론 오늘날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Cowell et al., 2018). 한편,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도 자연스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안의 하나로 전 세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 그 자체는 자산 불평등을 직접 다루거나 배타적인 재산 소유권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산 소유권의 문제를 내세우며 경제적 불평등을 다룬 기존의 논의를 호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가장 영향력이 큰 현대 정치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롤스(John Rawls)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¹⁾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977년 노

1) 'property-owning democracy'의 번역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재산 소유 민주주의', '자산 소유 민주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이 가운데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가장 지역에 가깝고 비교적 널리 쓰여 이 글에서도 이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용어가 롤스의 제안이 담고 있는 핵심을 잘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잠정적이지만 그의 의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용어로 '자산 분산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우선 롤스는

벨경제학상을 받았던 제임스 미드(James Meade)의 논의가 롤스의 이 제안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는데, 미드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지지자였고, 롤스는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우선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이어간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부정적 시각을 밝힌 롤스의 단편적인 언급과는 별개로, 롤스의 이론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살피는 데에 있어서 크게 대립하는 견해가 있다. 하나는 롤스의 이론으로 기본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롤스의 이론과 기본소득은 화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글은 롤스의 주장을 재해석하면서 전자의 입장에 힘을 신는다. 하지만, 롤스는 롤스가 반박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롤스의 이론 자체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다. 롤스의 정의론과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시도가 아직 어떤 공통의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어서 이에 관한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롤스의 이론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소득과

‘property’를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재산보다는 자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owning’은 결과적 소유를 말하는데, 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의 광범위한 분산이다. 이때 사전적 성격이 강한 분산이라는 단어가 사후적 성격이 짙은 분배 혹은 배분보다는 롤스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한다. 한편, 영어권의 논의에서 이 용어 문제를 직접 다룬 논의는 아직 찾기 못했다. 다만, “광범위한 자본 소유”(widespread ownership of capital), 줄여서 “WOC”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내세우고 기본소득과 비교하는 시도가 있고(Festl, 2013: 155),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소규모 기업가 중심 사회라는 이미지가 퇴행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사례가 있다(Williamson, 2009: 444-445).

재산 소유 민주주의 사이의 공통 기반이 미드뿐만 아니라 롤스의 이론에서도 발견된다는 뜻이다. 이 글은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넘어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밀접히 결합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양자 사이에는 각기의 고유성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성이 있기에 이러한 연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산과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시대를 극복하고자 할 때 자산의 분산과 소득의 보장을 한 시야에 넣고 양자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다.²⁾

2.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1) 미드의 제안

사실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 관해 여러 단편적인 생각들을 피력했을 뿐 완전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가 서술한 이러한 단편들은 그의 이론에 부합하는 대안적 정치 경제 형태의 일반적인 개요에 불과하다.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아이디어와 그 명칭을 미드로부터 가져왔다.³⁾ 따라서 미드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2)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의 국제적 현황에 관해서는 신진욱(2013)과 Balestra and Tonkin(2018)을 보라.

3) 이 용어 자체는 영국의 보수 성향 지식인이자 의원이기도 했던 노엘 스킨턴(Noel Skelton)이 1920년대에 처음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Jackson, 2012; Ron, 2008).

전체 사유재산의 과도하게 큰 부분 혹은 지나치게 작은 부분을 소유하는 시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개별 시민은 이제부터 자신의 소득의 상당 부분을 그 재산으로부터 얻을 것이다. (Meade, 1993[1964]: 41)

미드는 모든 시민이 재산을 고르게 나눠 갖는 이상적인 사회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그는 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혼합경제의 중요한 한 요소라고 보았다. 여러 다른 요소들도 이 혼합경제에 접목될 수 있는데, 기본소득 제도와 노동자가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대규모 기업이나 은행과 같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기관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Meade, 1993[1964]; Schuppert, 2013).

사실 미드가 구상한 재산이 동등하게 사적으로 소유된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사회적으로 소유된 재산을 기초로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사회배당(social dividend)을 지급하는 사회적 소유 국가는 소유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다. 미드는 이 두 체제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같다고 보았다(Meade, 1993[1964]: 60-61). 이러한 관점에서 미드 이론의 핵심은 재산의 소유 형태를 떠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 대한 제안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균등한 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 그리고 미드가 기본소득의 열렬한 주

4) 미드는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제안이라 할 수 있는 『아가 소토피아: 파트너십의 경제학』(Agathotopia: The Economics of

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롤스와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이곳이다. 롤스는 균등한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 것이 라기보다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을 일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그가 제안한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를 수립하고자 했다.

한편, 미드는 재산 소유의 평등화와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기존의 복지국가 정책들의 대체가 아니라 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Meade, 1993[1964]). 미드의 1964년 저작에 나타난 복지국가에 대한 그의 견해는 언뜻 보기에 롤스의 2001년 저작에서 강조된 견해, 즉 복지국가 자본주의와 날카롭게 대립하는 견해와 상반되어 보이지만, 전자의 시대 배경이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였고 후자의 배경은 신자유주의의 득세 이후 불평등의 심화가 두드러지는 시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모순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자산의 광범위한 분산

이제 롤스의 논의를 따라가 보자. 롤스가 제안한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기본 특징은 자산의 광범위한 분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강력한 과세,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 보장 등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O'Neill, 2009; Schuppert, 2013). 이 중 두 번째 특징은 사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롤스가 제안한 것이고, 세 번째는 롤스의 정

Partnership)(Meade, 1989)에서 국가의 생산적 자산 가운데 절반을 소유하는 공동체 기금의 형성과 이러한 사회적 소유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과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권정임(2015)을 보라.

의의 원칙 가운데 하나이자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지향점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지점은 바로 자산의 광범위한 분산이라고 할 수 있다.⁵⁾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매 시기의 마지막에 털 가진 사람을 위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매 시기의 시작에 생산적 자산과 인적자본(즉, 교육과 숙련기술)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 이[복지국가 자본주의가 소수 계급에게 생산수단을 거의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것]를 막는다. 이 모든 것은 공평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한다. 그 목적은 단순히 사고나 불운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토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Rawls, 2001: 139)

롤스는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의 재분배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의 분산을 분명하게 구분한다(Schefczyk, 2013). 그리고 전자는 그가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이고, 후자는 그가 주장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또한,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임을 분명히 밝히면서(Rawls, 2001: 135-136),⁶⁾ 나아가 자유방임 자본주의, 복지국가 자본주

5) 미드와 롤스 이외에도 자산의 분산에 기초한 평등주의적 전략을 제시한 이들은 있다. Bowles and Gintis(1998)와 Gamble and Kelly(1996)가 대표적이다.

6) 롤스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공존하는 자본주

의, 명령경제를 지닌 국가사회주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자유주의적(민주적) 사회주의 등의 다섯 종류의 체제를 열거한다. 이 체제들 가운데 그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두 체제인데, 이 두 체제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롤스는 이 두 체제 사이에서 현실적 선택을 하는 문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역사적 배경 등 다른 많은 요인에 달려있다고 말한다(Rawls, 2001: 136-139).

3)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과제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그 자체가 지닌 몇 가지 난점들을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기본소득과 어떤 형태로든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 것들이다. 우선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상속 및 증여세를 언급할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들을 제시하지는 않는다.⁷⁾⁸⁾ 그런데, 상속 및 증여세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의 기본 제도들 탓에 이 체제가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예를 들어 Raekstad, 2017). 한편,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포함한 그의 이론에 대한 좌파적 비판은 매우 오래되었는데, 이로부터 롤스를 방어하며 그의 이론이 사회주의 혹은 맑스주의의 사회 정의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예를 들어 DiQuattro, 1983).

- 7) 롤스가 제안한 상속 및 증여세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은 누진과세 원칙이 물려주는 사람의 측면에서 상속 및 증여의 전체 규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측면에서 그 수령액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롤스는 이러한 방식이 부동산과 생산적 자산의 더욱 고르고 너른 분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Rawls, 2001: 161).

이를 통해 오늘날 압도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의 집중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부를 상속 혹은 증여라는 수단보다는 승자독식 시장에서의 성공과 우월적 지위를 통한 막대한 보상을 통해 축적하기 때문이다. 즉,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것은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충분조건이 되기는 어렵다.

롤스는 자산 소유의 심각한 불평등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의 상당 부분에 대한 통제를 소수의 손에 넘겼다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만이 소수에 의해 경제와 정치가 좌우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보았다(Rawls, 2001: 137, 139). 그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구조적인 자산 불평등에 주목한 롤스의 관점에서 이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정치 경제적 효과를 먼저 살피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구조적 불평등의 형성과정과 정치와 경제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멈춘 롤스의 논의는 다소 일면적 성격을 지닌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에 어떤 경로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정치적 불평등이 다시 경제적 불평등에 어떤 통로로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경제와 정치에 대한 기존 소수 계급의 지배력을 완화하려면 소유 구조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수단들도 뒤따라야 한

-
- 8) 물론 롤스는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을 실현하기 위한 과세를 언급하는 가운데 소득세보다는 소비세 선호 견해를 밝힌다. 그는 면세점이 되는 일정한 소득 이상의 총지출에만 정률 소비세를 적용함으로써 적절한 사회적 최저선(social minimum)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이 최저선을 올리거나 내리고 한계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차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Rawls, 2001: 161). 한편, 사무엘 프리먼(Samuel Freeman)은 소득세가 “노동과 생산적 노력과 기여”에 대한 의욕을 꺾기 때문에 롤스가 소득세보다는 소비세를 선호했다고 해석한다(Freeman, 2007: 228).

다(Gamble and Kelly, 1996; Schefczyk, 2013). 즉,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한 제도들뿐만 아니라 작업장 민주주의를 포함한 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함께 필요하다. 롤스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정치 경제의 원칙』(*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1848)에서 밝힌 노동자 경영 기업에 대한 구상과 자신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장기적 전망 아래 작업장을 포함한 경제 영역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Rawls, 2001: 178-179).

사실 오늘날 초국적 기업 대부분을 다양한 주주 집단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주들 다수는 경제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적 기업을 그저 지켜보는 힘없는 방관자에 불과하다(Jackson, 2012). 이는 주주 구성의 변동을 포함한 소유 구조의 변화가 저절로 통제의 민주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독점적인 소유 구조보다는 더욱 분산된 소유 구조 아래에서 기업과 경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경제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마주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은 바로 초국적 금융시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초국적 경제 체제의 존재다. 이러한 조건은 소유의 분산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실현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4)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말리부의 서퍼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일견 사회적 최저선을 받을 수 있을 뿐인 사람에게도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과 충돌한다(Zelleke, 2005). 사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재산 소유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보장과 일정한 조건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최저선 보장이 공존하는 것은 롤스의 논의에 기대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한다.⁹⁾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롤스의 언급 탓에 무임승차자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말리부(Malibu)의 서퍼(surfer)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가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¹⁰⁾

이 서퍼의 존재는 흔히 롤스의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근거로 쓰이는데, 롤스는 일정한 몫의 자산을 지닌 어떤 개인이 이를 탕진하면서 서퍼로서만 살아갈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없다. 롤스가 기본소득에 대해 냉담해 보이는 견해를 취했지만, 자신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우려를 왜

9) 여기서 ‘조건이 부과된 사회적 최저선’이라고 할 때의 조건은 의무나 강제 의 부여와는 전혀 다르다. 롤스는 품위 있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들을 보장하는 최저선의 개념은 복지국가 자본주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이 실현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상호성(reciprocity)의 원리로부터 도출된 사회적 최저선을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조건이 추가된다고 본다(Rawls, 2001: 129-130).

10) 롤스는 “말리부에서 온종일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양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이들에게 공적 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한다(Rawls, 1988: 257, n. 7). 롤스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Rawls, 2001: 179).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만일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특정한 전제 때문이라면, 그 전제를 기본소득에도 똑같이 적용할 때 롤스의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는 결국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아래 인용문은 바로 그 전제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준다.

한편,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그 목적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여겨지는 시민들 사이의 공정한 협동 체제라는 사회의 이상을 기본 제도들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러한 제도들은 반드시 처음부터 소수만이 아니라 시민의 수중에 보편적으로 이들이 평등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협력하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생산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Rawls, 2001: 140)

여기서 충분한 생산수단을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협력하는 사회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묵시적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대가로 한 것은 아니다.¹¹⁾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개인이 갖는 일정한 자산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도 이러한 충분한 생산수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롤스가 상정한 이러한 암묵적 기대는 사라지는 것일까. 다시 말해, 기본소득의 보장은 과연 이러한 공정한 협동 체제의 탄생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인가.

11) 물론 롤스가 이러한 생산수단의 부여를 공정한 협동 체제의 실현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체제의 기본 제도들이 “협력하는 덕목”(cooperative virtues)을 고취해야 한다고 보았고, 전적으로 협력하는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을 예비하는 아동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한다(Rawls, 2001: 116, 156).

3. 롤스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1) 차등의 원칙

롤스의 정의론과 기본소득의 관계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다. 기본소득이 롤스의 이론을 보완하거나 이 둘이 잘 들어맞는다는 의견도 있고, 롤스의 이론이 기본소득을 거부한다는 견해도 있다 (Festl, 2013: 142). 예를 들어, 사이먼 번바움(Simon Birnbaum)은 롤스의 저작에서 무조건적 이전소득을 지지하는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대한 그의 언급, 적절한 사회적 최저선의 보장과 차등의 원칙을 연결 짓는 것 등을 언급한다(Birnbaum, 2010: 498).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롤스의 이전 부서(transfer branch)는 모두에게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필요에 따른 청구를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Rawls, 1999[1971]: 244).

반면, 롤스는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의 보장을 넘어 다른 기본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의 보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의 관점에서 후자는 정의의 두 원칙이 함축하는 평등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미드를 비롯한 기본소득 지지자의 의견과 롤스의 의견이 갈린다. 롤스는 실질적인 정치적 자유의 보장과 차등의 원칙과 함께 다른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주장하는 것에서 멈춘다.

만일 이것[기본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의 보장]이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가치라는 이상을 나타내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부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차등의 원칙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것이다. (Rawls, 2001: 151)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차등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다. 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이 차등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해석한다.¹²⁾ 이 차등의 원칙을 문자 그대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한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용인된다고 해석할 경우, 기본소득이 이 원칙을 충족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같은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소득이 없거나 가장 적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비율로 소득의 증가를 가져다줌으로써 가장 큰 상대적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롤스의 두 번째 정의의 원칙에서 두 번째 부분, 즉 차등의 원칙이 기본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롤스의 견해와는 거리가 있다.

롤스가 구상한 정의의 원칙이 실현되는 사회의 기본 구조는 사회적 협동의 원칙 아래에 모두가 생산적 일에 참여한다는 전제 위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실현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적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12) 대표적으로, 비록 상세한 주장은 생략하고 있지만,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의 견해가 그렇다(Standing, 2017).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는 롤스의 이론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거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지만, 여가를 포함하여 차등의 원칙을 해석하는 것은 원래의 의도와 반대로 롤스의 이론을 기본소득에 더 가깝게 만든다고 본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체제다. 이러한 전제가 현실에서 충족된다면 롤스의 이론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둘러싼 많은 논란은 종식될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그의 부정적 태도는 그의 이론이 기본소득과 충돌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전제와의 충돌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생산적 노동의 문제

만일 모두가 예외 없이 생산적 일에 참여한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롤스가 인정했다면 그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전제에 문제가 있다면 기본소득은 충분히 롤스의 이론과 양립할 수 있다. 두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생산적 일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여전히 생산적 일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자. 이는 사실 롤스가 롤스를 반박한다. 그는 가족이라는 제도의 본질적 역할 가운데 하나가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재생산 노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라는 견해를 취한다(Rawls, 2001: 162). 이에 따르면, 재생산 노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가족 구성원도 사회적 협동의 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일단 일을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실업을 택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는 재생산 노동이나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적 협동으로 인정받을만한 일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가 유일하게 하는 일은 여가를 즐기면서 소비 활동에 참여하는 것뿐이라고 하자. 그는 롤스가 예로 든 말리부의 서퍼다. 하지만, 이 서퍼는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는 아니다. 현재는 서핑을 즐기지만, 평생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한 시점과 한 공간에서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의 단면과 그 사람의 생애에 걸친 전체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

롤스도 사실 질병이나 사고 탓에 한동안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개인의 예를 들면서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된 개인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걸쳐 협력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을 상정한다(Rawls, 2001: 175). 이 예외적인 범주를 좀 더 확장하면 롤스의 이론은 충분히 기본소득을 수용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이 롤스가 말한 말리부의 서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서퍼가 평생 그곳에서 서핑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이다.

리처드 대거(Richard Dagger)의 제안처럼 시민교육과 함께 협력하는 덕목을 기르고 무임승차의 기회나 불합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는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일명 말리부의 서퍼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Dagger, 2012). 이러한 서퍼의 존재에 관대하게 혹은 냉담하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낫다.¹³⁾

13) 최근 유럽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정책 수단의 고려 없이 기본소득이 실행된다고 해도 이러한 서퍼가 득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조사는 2016년 4월과 2017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달리아 리서치(Dalia Research)가 유럽연합 28개국에서 실시한 약 만여 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다. 이때 사용된 기본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노동 여부 및 다른 어떤 소득

물론 어떤 체제에서든 이러한 서퍼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생산적 활동과 비생산적 활동 혹은 여가와 여가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비생산적 활동 혹은 여가로 여겨지던 것들이 때로는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직접적인 생산적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가는 다음의 어떤 생산적 활동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3) 자존감과 소속감의 문제

하지만, 생산적 일에 참여한다는 전제를 되짚어 보는 것으로 롤스의 이론과 기본소득이 충분히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롤스의 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일을 통한 자존감 혹은 소속감의 형성과 상호성 원리의 실현이라는 문제와 어떻게든 대면해야 한다. 먼저 노동을 통한 자존감 또는 소속감의 형성 문제를 살펴보자.

마이클 페슬(Michael Festl)은 롤스의 노동 관념에 효율, 자기 존중, 공동체의 소속감과 같은 세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고 보았다(Festl, 2013). 롤스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러한 체제가 개인에게 충분한 경제적 수단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시혜나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시혜나 동정은 개인의 자존감 형성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따라

원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소득이다. 이는 다른 사회보장 지급을 대체하고 모든 기본적 요구들(음식, 주거 등)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높다”(Dalia Research, 2017).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노동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일을 그만두겠다는 응답자는 이 두 차례 조사에서 각각 전체 응답자의 4%와 3%에 불과했다.

서, 롤스의 이러한 노동 개념에 따르면, 각 개인이 어떤 방법을 통해 경제적 수단을 획득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롤스는 복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노동을 통해 생활수단을 획득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Festl, 2013). 완전고용을 요구하는 그의 견해도 이러한 맥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¹⁴⁾

충분한 기본소득이 기존 노동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명확하므로 노동을 통한 자존감 형성의 기회를 줄인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설득력 있는 반론이 가능하다. 모든 형태의 노동이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가정의 비현실성 때문이다.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는 노동을 생각해보자. 대부분은 이러한 직업이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존감을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길 것이다. 충분한 기본소득은 반대로 기존의 열악한 노동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다른 의미 있는 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늘리며, 여러 사회적 낙인 효과까지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자존감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¹⁵⁾

-
- 14) 롤스는 “일을 원하는 사람은 일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완전고용”을 지지한다(Rawls, 1999[1971]: 244). 롤스가 완전고용이라는 이상을 강조한 이유는 그의 이론에서 시민이 차지하는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그는 모든 시민을 “전 생애에 걸쳐 전적으로 협동하는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모두가 일이나 사회적 삶의 부담을 나누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본다(Rawls, 2001: 179).
- 15) 번바움은 사회적 인정과 종속으로부터의 탈피가 자기존중의 사회적 기반에 대한 롤스의 인식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면서, 기본소득이 그것의 경제적 기대 효과와 더불어 바로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형태의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irnbaum, 2010: 502).

롤스는 또한 개인이 의미 있는 노동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다. 이 경우 개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심어주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awls, 2002 [1999]). 페슬은 노동을 통한 자기존중과 공동체 소속감 형성을 구분하여 전자에서는 다른 사회활동도 노동을 대체할 수 있지만, 후자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Festl, 2013: 159).¹⁶⁾ 하지만, 자본주의적 노동 일반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의식을 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다. 앞서 자기존중의 예와 마찬가지로,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을 생각해보자. 이런 노동을 수행하는 시민이, 롤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순히 사회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시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쉽게 찾을 수 있겠는가(Rawls, 2002[1999]: 50). 자신의 노동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존감은 물론이고 사회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의 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4) 상호성의 문제

이제 상호성의 원칙 문제로 넘어가 보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윤리적 비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이 상호성의 원리를 위배한다는 것이다.¹⁷⁾ 즉, 기본소득은 아

16) 페슬은 자신의 주장을 완화하기 위해 자원봉사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한다. 또한, 노동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나 현재의 조건 속에서 그런 효과가 실제로 발휘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인다(Festl, 2013: 159-160).

17) 일부는 상호성을 정부 정책의 중립성 혹은 모두에게 같은 규칙이 적용되

무런 대가 없이 사회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문제라는 것이다. 롤스가 복지에 기대어 온종일 말리부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Rawls, 2001: 179).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그 본질에서 상호성(reciprocity) 혹은 호혜(mutual benefit)의 원칙이다(Rawls, 1999[1971]: 88, 2001: 64). 차등의 원칙은 언뜻 보기에 가장 열악한 위치의 사람에게 편향된 것처럼 보이지만, 용납 가능한 불평등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리다. 쉽게 말해, 사회적 협동에 참여한 사회구성원 사이의 제로섬(zero-sum)이 아닌 윈윈(win-win) 상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차등의 원칙은 더욱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더 큰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애(fraternity)의 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Rawls, 1999[1971]: 90). 롤스가 보기에 말리부의 서퍼는 사회적 협동의 바깥에 존재하기에 상호성의 원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지지자 혹은 롤스주의자 가운데 일부는 이 상호성의 원리를 다소 협소하게 해석하여 롤스가 일종의 노동 의무 부과

는 법 앞의 평등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Widerquist, 1999). 상호성을 이렇게 이해할 때 기본소득은 상호성의 원리를 충분히 충족하지만, 이는 서로 주고받는 일반적 의미의 상호성 원칙에 견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논리를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스투어트 화이트(Stuart White)는 공정한 상호성(fair reciprocity)을 주장하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White, 2003). 하지만, 그가 이러한 상호성을 강제하기 위해 고안해 낸 관료적 사회 체제는 롤스의 상호성 원칙을 더욱 경화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논점을 낳는다. 덧붙여, Widerquist et al.(2013)의 제3부는 이 상호성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의 큰 흐름을 보여준다.

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한다.¹⁸⁾ 하지만,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는 것일 수 있으며, 롤스의 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자유주의 원칙과도 충돌한다. 롤스 자신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한다.

자유 의 우선성은 우리가 물질적 재화의 측면에서 매우 생산적인 노동에 참여하도록 강제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노동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할지는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장려책에 비추어 자신이 결정할 문제다. (Rawls, 2001: 64)

즉, 롤스가 비록 모든 시민의 생산적 노동에의 참여와 완전고용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그가 생각하는 사회적 협동의 핵심적인 원리로 본다고 하더라도,¹⁹⁾ 이는 어디까지나 강제적인 수단이 아닌 참여의 장려와 사회적인 합의로 도달해야 할 목표로 제시된다. 롤스는 또한 사회적 협동을 절대적 중앙 권력의 지시를 통해 조정되는 어떤 형태의 활동과도 명확히 구분한다(Rawls, 2001: 6). 그리고 롤스는 사회적 협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협력적 덕목의 고취와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Dagger, 2012).

18) 예를 들어, 권정임(2016)은 롤스가 '노동 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다고 본다. 반면, 목광수(2019)는 롤스의 상호성을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19) 롤스는 사회적 협동이 "항상 생산적이고, 협동이 없다면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분배할 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가정한다(Rawls, 2001: 61).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면, 롤스의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견해는 한층 완화된다. 다시 말해, 롤스의 사회적 협동을 위한 상호성의 원칙은 말 그대로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원칙이지, 상호성의 원칙을 일대일로 주고받는 계약 관계와 마찬가지로 좁게 해석하여 이와 어긋나는 경우를 엄격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상호성의 원리는 명시적 계약에 따른 의무 조건의 부과와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서 공동체 유지를 위한 묵시적 성격의 보편적 의무에 가깝다.

상호성의 원리를 등가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좁게 해석한다면 복지 수급자에 대한 일정한 조건의 부과도 정당화되지만, 노력의 범위를 벗어난 보상 또한 문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전자와 달리 후자에 대한 논의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노동이나 여타 활동에의 참여를 전제로 한 복지 혜택은 일종의 계약 이행이지 호혜적인 것과 거리가 있다. 또한, 상호성의 원리를 좁게 해석할 경우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의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사회수당조차도 이 원리와 충돌한다. 아동수당은 미래의 인적자원에 대한 일종의 투자로써 장차 사회공동체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호혜적 성질을 지닌다. 기본소득도 이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호혜성을 발휘할 수 있다. 시민교육을 비롯하여 여러 정책 수단들이 적절히 어우러진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4.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결합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

구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²⁰⁾ 다만, 롤스의 이론이 기본소득과 친화력이 있다고 보는 측에서는 이 둘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만일 개인이 일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떤 기금의 지분으로 투자하여 얻는 지속적인 배당 혹은 수익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한 현금 이전소득이 있다면, 이 둘의 차이는 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Schefczyk, 2013). 소득의 발생 과정이 아니라 결과적인 소득의 관점에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미드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최저선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급될 경우 노동이 사회적 최저선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절대적 의존은 약해지고 노동으로부터의 이탈 기회가 증가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도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에 대한 의존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기본소득이 앞서 논의한 것처럼 롤스가 말한 정의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실현되어 소득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기본소득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충분

20) 한국에서의 논의 가운데, 권정임(2016: 65)은 미드와 롤스의 이론이 “공유사회에 대한 유사한 기획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면서 이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접목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뒤로 미룬다. 한편, 목광수(2019)는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재산 소유가 아닌 민주주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뿐, 이 글에서처럼 자산 분산 자체의 적극적인 의미에 주목하지 않는다. 덧붙여, 정태욱(2016)과 홍성우(2013)는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기본소득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히 안정적으로'라는 전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상속 및 증여세라는 수단 외에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롤스가 혁명적 체제 전환을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과도기를 상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이 시기에 자산의 분산이 충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 특히, 재산 소유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의 재정 손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본소득을 포함한 필수적인 복지 안전망의 필요성은 커진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페슬은 자산의 분산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 국가에 의해 이것이 계속 발전되지 않는다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 경우 기본소득이 이를 보장하는 도구로 기능하면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또한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산 형성에 이바지할 수도 있으므로 재산 소유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본다(Festl, 2013).

한편, 쓰드 윌리엄슨(Thad Williamson)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자산이 분산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현금 자산의 분산 방식으로 액커만-알스토틀(Ackerman-Alstott)의 사회적 지분(stakeholding) 제안과 기본소득의 장점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전략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Williamson, 2009: 443-444). 하지만, 미국을 배경으로 그가 제시한 구체적 설계안을 보면 현금 자산의 이전 방식은 기본소득보다는 액커만-알스토틀의 제안에 가깝다(Williamson, 2012).²¹⁾ 윌리엄슨 또한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21) 윌리엄슨은 미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지

논하면서 기본소득과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분명하지
만, 여기서 기본소득의 역할은 폐슬의 제안과 비교할 때 매우 제
한적이다.

지금까지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공통점 혹은 상호
보완적 성격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
하여 왜 이 두 제도가 공존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일정한 수준의 조건 없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물론 그 재원 마련 논의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다양한
과세가 언급되고, 또 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이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소득 실현의 절대적 전제조건은 아니
다. 반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과도하게 집중된 부를 널리 고
르게 분산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이 분산된 자산이 모두에게 당
장 일정한 수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
다. 즉, 이 두 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이면서 각기
고유의 정책 목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두에게 안정적인 소
득을 보장하면서 부의 불평등을 직접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소
득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동시 병행 전략이 요청된다.²²⁾

만,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알래스카(Alaska)의 영구기금배당(Permanent Fund Dividend)처럼 공동소유 자원에 기반한 기본소득 요소를 갖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언급한다(Williamson, 2012: 243). 한편, 화이트는 롤스가 액커만-알스토티의 제안과 비슷한 제도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으로 명시한 적은 없지만, 그러한 제안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White, 2012).

- 22)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김종철(2017)은 플라톤의 이상적 자산 배분 원칙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기본자산제를 주장한다. 그는 이 제도가 배타적 재산권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기본소득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분과도 구별되며 미드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한편, 기본소득에 부정적이지 않은 피케티는 그의 신

덧붙여,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기본소득과 달리 명시적으로 정치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Rawls, 2001: 148-150). 롤스가 가장 최소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 제시한 소득과 부를 비롯한 다섯 종류의 주요 재화는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고(Rawls, 2001: 58-59),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평등의 완화를 뜻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만나는 것은 정치적 평등의 기획과 결합하는 것이고, 일정한 소득 보장과 자산의 고른 분산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물질적 기초가 될 수 있다.

5. 맺으며

오늘날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한 자산 구조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논의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직접적인 대상으로 떠오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면 기본소득의 보장과 함께 롤스의 주장처럼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부의 문제를 손대지 않을 수 없다. 본래 공유적 성질을 지닌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유하거나 나누는 것을

간에서 25세가 되면 누구나 12만 유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분 아이디어와 흡사한) 제도를 새롭게 제안한다(Piketty, 2019). 이러한 대안들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 및 기본소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넘어서 이미 불평등하게 형성된 자산의 분산을 적극적으로 사고 할 필요가 있다.²³⁾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 정의와 분배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미드와 롤스의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과 조화될 수 있어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 체제와 잘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이 체제의 형성과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면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실현하는 제도는 기본소득 또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양자가 결합한 새로운 제도일 것이다. 부의 불평등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존중의 사회적 기초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자산의 분산과 기본소득의 보장은 롤스의 이론과 충돌하지 않고 충분히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흔히 기본소득이 상호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은 이 상호성을 시공간적으로 협소한 일대일 대응의 관계로 볼 때 가능한 것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롤스의 정의론이 이러한 편협한 해석을 지지한다고 볼 여지는 적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롤스에 대한 논의는 그의 이론이 기본소득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간혹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사이의 유사점이 언급되기도

23) 예를 들어, 스탠딩은 여러 형태의 공유지가 약탈당해 소수의 수증으로 들어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공유지의 오남용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공유기금(Commons Fund)을 형성하고 이 기금의 수익으로 공유배당(Common Dividend)을 실시하자고 제안한다(Standing, 2019). 공유지의 약탈이 현재의 불평등한 자산 구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자산 불평등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공유배당보다 더욱 포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했지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재산 소유권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자산 불평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기본소득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롤스 이론의 급진적 요소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기본소득 지지자의 시각에서는 그의 말리부 서퍼에 대한 냉담한 언급 탓에 그의 이론에 대한 선입견도 있다. 하지만, 롤스는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부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차등의 원칙이 작동하는 그의 이상적인 공정한 협동 체제 속에서는 이것이 이미 전제되고 있으므로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Rawls, 2001: 151). 이러한 이상적인 체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부를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과도기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이 롤스의 이론과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기본소득과 만나는 길을 개척하는 것은 그가 말한 공정한 체제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롤스가 복지국가 자본주의라는 낡은 패러다임과 대결하고 이를 넘어서려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롤스 이론의 급진적 요소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다. 기본소득을 기존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갇힌 기획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성요소로 바라보는 것은 롤스의 지향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본소득과 함께 자산 분산에 기초한 민주주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도처에서 무르익고 있다. 한국은 특히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낮은 수준의 복지에 더해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과 심화 되는 자산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신진욱, 2013). 다중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중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권정임, 「공유사회와 기본소득: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대와 철학』, 제26권 2호, 2015.
- _____,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시대와 철학』, 제27권 4호, 2016.
- 김종철, 「기본자산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동향과 전망』, 제101호, 2017.
- 목광수, 「롤즈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철학연구』, 제59집, 2019.
- 신진옥, 「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성」,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3호, 2013.
- 정태욱, 「존 롤즈의 정의론과 ‘재산소유 민주주의’론」, 『법학연구』, 제27권 3호, 2016.
- 홍성우,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의 이념: 미드와 롤즈의 비교」, 『법한철학』, 제70집, 2013.
- Balestra, C. and Tonkin, R., “Inequalities in Household Wealth across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2018.
- Birnbaum, S., “Radical Liberalism, Rawls and the Welfare State: Justifying the Politics of Basic Income”,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13(4), 2010.
- Bowles, S. and Gintis, H., “Recasting Egalitarianism”, E. O. Wright (ed.), *Recasting Egalitarianism: New Rules for Communities, States and Markets*, Verso, 1998.
- Cowell, F., Karagiannaki, E. and Mcknight, A., “Accounting for Cross-Country Differences in Wealth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4(2), 2018.

- Dagger, R., "Property-Owning Democracy, Education, and the Reasonable Surfer", *The Good Society*, 21(1), 2012.
- Dalia Research, "68% of Europeans Support Basic Income, 31% Want It 'As Soon As Possible'", 2017. https://daliaresearch.com/wp-content/uploads/2017/05/2017-04-21_basic_income.pdf.
- DiQuattro, A., "Rawls and Left Criticism", *Political Theory*, 11(1), 1983.
- Festl, M. G., "Between Sentimentalism and Instrumentalism. The Societal Role of Work in John Rawls's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Its Bearing upon Basic Income", *Analyse & Kritik*, 35(1), 2013.
- Freeman, S., *Rawls*, Routledge, 2007.
- Gamble, A. and Kelly, G., "The New Politics of Ownership", *New Left Review*, 220, 1996.
- Jackson, B., "Property-Owning Democracy: A Short History", M. O'Neill and T. Williamson (eds.), *Property-Owning Democracy: Rawls and Beyond*, Wiley-Blackwell, 2012.
- Meade, J., *Agathotopia: The Economics of Partnership*, Aberdeen: Aberdeen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Efficiency, Equality and the Ownership of Property*, re-printed in *Liberty, Equality and Efficiency*, Macmillan, 1993[1964].
- O'Neill, M., "Liberty, Equality and Property-Owning Democracy",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40(3), 2009.
- Piketty, T.,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Goldhammer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 _____, *Capital et idéologie*, Éditions du Seuil, 2019.
- Raekstad, P., "Property-Owning Democracy as an Alternative to Capitalis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2017. <https://doi.org/10.1177/1474885117725900>.

- Rawls, J., "The Priority of Right and Ideas of the Good",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7(4), 1988.
- _____,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1971].
- _____,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The Law of Peoples with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1999].
- Ron, A., "Visions of Democracy in 'Property-Owning Democracy': Skelton to Rawls and Beyond",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29(1), 2008.
- Schefczyk, M., "Background Justice over Time: Property-Owning Democracy versus a Realistically Utopian Welfare State", *Analyse & Kritik*, 35(1), 2013.
- Schuppert, F., "Comment on Michael Schefczyk", *Analyse & Kritik*, 35(1), 2013.
- Standing, G.,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Pelican, 2017.
- _____, *Plunder of the Commons: A Manifesto for Sharing Public Wealth*, Pelican, 2019.
- Van Parijs, P. and Vanderborght, Y.,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 White, S., *Civic Minimum: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conomic Citizenship*,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Basic Capital: A Policy Whose Time Has Come ... and Gone?", *The Good Society*, 21(1), 2012.
- Widerquist, K., "Reciprocity and the Guaranteed Income", *Politics and Society*, 27(3), 1999.
- Widerquist, K., Noguera, J. A., Vanderborght, Y. and De Wispelaere, J. (eds.), *Basic Income: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 Wiley-Blackwell, 2013.

Williamson, T., "Who Owns What? An Egalitarian Interpretation of John Rawls's Idea of a Property-Owning Democracy",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40(3), 2009.

_____, "Realizing Property-Owning Democracy: A 20-Year Strategy to Create an Egalitarian Distribution of Assets in the United States", M. O'Neill and T. Williamson (eds.), *Property-Owning Democracy: Rawls and Beyond*, Wiley-Blackwell, 2012.

Zelleke, A.,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Argument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Journal of Socio-Economics*, 34(1), 2005.

Linking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Basic Income

- An Exploration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Rawls's Theory of Justice -

Choi, Gwang Eun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wealth inequality as well as income inequality across the globe. Moreover, alternatives to address the issue of economic inequality have also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For instance, the most popular one is an idea of basic income aiming to guarantee everyone a certain amount of money without any strings attached.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however, focusing on how to deal with today's worsening wealth inequality. This situation leads us to seriously consider Rawls's property-owning democracy, which pursues the widespread ownership of assets. If we want to address income and wealth inequalitie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both dispersing assets and securing income. This article argues that Rawls's theory can

be a point of departure for that. This paper proceeds with describing the main features of Rawls's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then tries to show that Rawls's theory can be consistent with the basic income idea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his theory. The subsequent section points out that there are not only common grounds but also interdependence between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basic income, although they retain their own unique policy goals.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basic income guaranteeing a social minimum for all ought to be closely intertwined with Rawls's property-owning democracy to achieve a great goal of reducing today's economic disparities.

Subject Sphere: Political Philosophy, Social Philosophy

Key Words: Inequality, Basic Income, James Meade, John Rawls, Property-Owning Democracy